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관 선정시 국가 또는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수정(안 제44조제2항)

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시 국가 또는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요건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가 또는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<단서 신설> 1. ~ 4. (생 략) ③ (생 략)	제44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국가 또는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49